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설명자료

2016. 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차 례

• 「기업활력법」이란? .....	01
•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은? .....	02
• [참고] 사업재편 주무부처의 선정 .....	03
• 「기업활력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받나요? .....	04
• 「기업활력법」을 통해 어떤 특례가 주어지나요? .....	05
① 상법 .....	06
② 공정거래법 .....	07
③ 세제 및 자금지원 등 .....	09
• 사업재편 실제 사례에 대한 「기업활력법」 적용효과 .....	11
합병 .....	12
소규모합병 .....	13
소규모분할 및 자산양수도 .....	14
• [참고] 「기업활력법」 특례내용 요약 .....	15

## Q 「기업활력법」이란?

- A
-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중요하나, 현행 제도들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년 한시 특별법입니다.
  -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분야 기업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Q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은?**

- A** • 「기업활력법」은 신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법 제2조제2호)

〈사업재편의 유형(예시)〉

구 분	구체적 내용
합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수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하는 사업재편</li> <li>- 중복투자 방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li> </ul>
분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의 회사를 2개 이상으로 나누는 사업재편</li> <li>- 경영위험 최소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위해 추진</li> </ul>
영업양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양도하는 사업재편</li> <li>- 주력사업 집중,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li> </ul>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 총수를 교환·이전해 완전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재편</li> <li>- 순환출자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추진</li> </ul>

-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법 제4조)
  - ✓ 부실(징후)기업이더라도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적용가능
  - ✓ 과잉공급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영업이익률, 판매가격변화율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시행령과 실시지침에서 구체화될 예정.
- 「기업활력법」은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업종에 따른 구분 없이 과잉공급 분야의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해당 업종을 소관하는 부처가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는 주무부처가 됩니다.
  - ✓ (산업부) 제조업·유통업, (금융위) 금융업, (국토부) 건설업, (해수부) 해운업 등

**Q [참고] 사업재편 주무부처의 선정**

- A** • 주무부처는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입니다.(법 제2조제5호)

〈산업별 주무부처(예시)〉

산업구분	주무부처	산업구분	주무부처
농·임업	농림부	숙박·음식점업	문화부
어업	해수부	운수업	국토부
광업	산업부	통신업	미래부
음·식료제조업	농림부	사업서비스업	산업부
담배제조업	기재부	금융·보험업	금융위
전기·가스사업	산업부	부동산임대업	국토부
수도사업	국토부	교육서비스업	교육부
건설업	국토부	보건·복지사업	복지부
도·소매업	산업부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문화부

**Q 「기업활력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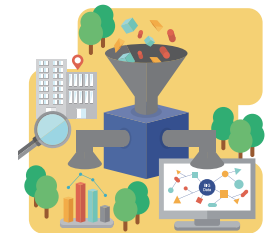
A	승인 절차	활용 예시
	주무부처 사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업계 대기업인 A사는 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강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중소기업인 B사에 이관하는 사업재편계획을 마련</li> <li>• 이후 A사와 B사는 철강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상담</li> </ul>
	사업재편계획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와 B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 신청</li> <li>• 사업재편계획 신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동시에 개시</li> </ul>
	주무부처 검토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잉공급 여부·특례지원사항 등을 검토</li> </ul>
	심의위원회 심의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는 검토결과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검토결과를 심의</li> </ul>
	주무부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 심의 종료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재편계획 승인여부를 A사와 B사에 통보</li> </ul>
	사업재편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A사와 B사의 사업재편에 대해 절차간소화, 세제지원 등의 특례 제공</li> </ul>

**Q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는 어떤 특례가 주어지나요?**

**A** ① 「상법」, 「공정거래법」상의 절차와 규제들을 대폭 간소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② 이에 더해 세제·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고용안정, 사업혁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③ 사업재편과 관련 규제애로 해소도 지원하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1

## 「상법」상 사업재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재편 확대

- ✓ 현행 「상법」에는 없는 소규모분할 제도가 신설되어 자산총액 대비 10% 미만의 사업부문을 떼어낼 때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 ✓ 소규모합병 적용대상 확대로 합병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이 합병기업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현행 「상법」은 10%미만)인 경우 합병기업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 \* 일반적 합병과 달리 소규모합병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
- ✓ 간이합병 적용대상도 확대되어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현행 「상법」은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합병기업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 ●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 사업재편 소요기간 최대 44일 단축

- ✓ 현행 「상법」상 2주 전 진행하는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공고와 주총 소집 통지·공고를 7영업일 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법 제18조)
- ✓ 현행 「상법」상 1개월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이 10영업일 이상으로, 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매수청구 신청기간이 10일 이상으로 각각 단축됩니다.(법 제19조·제20조)
  - \* 은행지급보증, 보험증권 제출 등 사업재편에 따른 채권자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 가능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

- ✓ 현행 「상법」상 상장법인 1개월, 비상장법인 2개월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이 각각 3개월, 6개월로 연장되어 사업재편시 충분한 자금조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 2

##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 ●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특례

- ✓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한 시점에 자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 제9조)
-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주무부처 의견이 고려됩니다. (법 제10조)

### ● 상호·순환출자 제한 규제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상호·순환출자 해소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 \* 상호출자 : 독립법인끼리 자본을 맞출자하여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출자방식
  - \* 순환출자 : 3개 이상 계열사가 연쇄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나가는 출자방식

### ● 채무보증 제한 규제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규제가 3년간 유예됩니다.
  - \* 다만, 승인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 되거나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동 특례 적용불가



## 2

###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 ●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사업재편계획 제출 당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 지주회사가 자본총액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3년간 유예됩니다.
- ✓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40%(상장회사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3년간 유예됩니다.
- ✓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3년간 유예됩니다.

#### ●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 ✓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의 40%(상장회사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3년간 유예됩니다.
- ✓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내 다른 자회사의 출자가 3년간 가능합니다.

####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 손자회사가 새로운 증손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3년간 유예됩니다.
  - \* 3년 동안 증손회사 주식의 5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두 손자회사가 하나의 증손회사에 대해 3년간 공동출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 3년 동안 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 50%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3

### 세제와 자금, 규제특례를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 ● 세제 지원(「조특법」·「지특법」)

- ✓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4.2%)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해 주고,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0)
- ✓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 취득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법인세가 3년간 이연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1)
- ✓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모회사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자회사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도 4년간 이연되며, 모회사의 증여세(24.2%)도 비과세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7)
- ✓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이연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6)
- ✓ 주주 등이 자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증여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이연되고, 증여한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8)
- ✓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이연되고, 해당 금융기관의 면제된 채무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9)
- ✓ 합병·증자·회사설립 등에 따른 회사의 자본금 증가시 등록면허세(자산증가분의 0.4%)의 50%가 감면됩니다.(「지특법」 제57조의2)

### 3

## 세제와 자금, 규제특례를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 ● 재정자금 지원(법 제28조·제29조·제30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재정자금이 지원됩니다.

\* 개별지원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제공(법 제31조)

✓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재취업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승인가업 근로자의 전직도 지원 가능합니다.

### ● 규제 특례제도

✓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에 사전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가 도입됩니다.(법 제32조)

✓ 기업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처 판단하에 해당 규제를 철폐·완화하는 '기업실증 특례제도'도 도입됩니다.(법 제33조)

#### 〈기업실증 특례제도 운영절차〉



## 사업재편 실제 사례에 대한 「기업활력법」 적용효과





# 1

## 신사업 진출을 위한 흡수합병

### ● 사례 개요

- ✓ 과잉공급업종 국내기업 A사가 신사업 진출을 위해 다른 국내기업 B사를 흡수 합병한 사례
- ✓ 합병 이후 존속회사(A사)의 자본금 1,000억원 증가,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금액 120억원, 중복자산 양도차익 100억원\* 발생

\* 중복자산 양도금액으로 1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전제

### ● 기대효과

구분	기존 방식	「기활법」 적용	기대 효과	
상법특례	주총특별결의 관련 절차	62일	50일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기간	20일	10영업일	⇒ 총 소요기간 (92일) 중 약 22일 단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30일	10영업일	
	기업의 주식매수기간 연장	1개월	3개월 (2개월간 이자비용 6천만원 절감)	
세제혜택	등록면허세	4억원	2억원 감면	⇒ 약 4.2억원 절감
	양도차익 과세이연	24.2억원	2.2억원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대·중소기업 평균 대출이자율 약 3% 적용

# 2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소규모합병

### ● 사례 개요

- ✓ 과잉공급업종 국내기업 A사가 과잉공급 해소 및 신기술 도입 다른 국내기업 B사를 합병한 사례
- ✓ 합병 이후 존속회사(A사)의 자본금 7,000억원 증가, 중복자산 양도차익 80억원\* 발생

\* 중복자산 양도금액으로 1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전제

### ● 기대효과

구분	기존 방식	「기활법」 적용	기대 효과	
상법특례	형태	일반합병	소규모합병	⇒ 총 소요기간 (119일) 중 약 60일 단축
	의결기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기간	20일	없음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30일	생략가능	
	등록면허세	28억원	14억원 감면	
세제혜택	양도차익 과세이연	19.4억원	1.7억원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 약 21.1억원 절감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대·중소기업 평균 대출이자율 약 3% 적용

### 3

## 과잉공급 해소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소규모분할

### ● 사례 개요

- ✓ 과잉공급업종 국내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장·토지·건물 등 주요 자산 일체를 신설법인에 양도한 사례
- ✓ 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650억원이며, 「기업활력법」 적용시 소규모분할 활용, 자산 양도 과정에서 양도차익 120억원 발생

### ● 기대효과

구분	기존 방식	「기활법」 적용	기대 효과
상 법 특 례	형 태	일반합병	소규모분할
	의결기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30일	생략가능
세 제 혜 택	등록면허세	26억원	13억원 감면
	양도차익 과세이연	29억원	2.6억원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 <b>총 소요기간 (90일) 중 약 30일 단축</b>
			⇒ <b>15.6억원 절감</b>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대·중소기업 평균 대출이자율 약 3% 적용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특례

분야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상법	· 주주총회 생략	· 소규모분할 도입, 소규모합병·간이합병 요건 완화
	· 조직재편 기간단축	· 주총 소집통지·채권자 이의제출·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단축
	· 자금부담 완화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
공정 거래 법	·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 마련
	· 지주회사규제 완화	·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 대규모 기업집단규제 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상호 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세제 자금	· 세제·자금지원	· 「조특법」·「지특법」 상 특례
사업 혁신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근거 마련	·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 제공, 경영·기술·회계자문,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지원
능력 개발 및 고용 안정	· 근로자 능력개발·실업예방	·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의무 부과
	·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교육 지원
	· 전직자 지원	· 전직자 재취업·창업을 위한 전직지원
규제 불확 실성 해소	· 법령·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여부 확인 요청 가능
	·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요청	·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제출시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팀장(☎044-203-4830), 고승진 사무관(☎044-203-4831), 문경준 사무관(☎044-203-4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활력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포털([www.oneshot.or.kr](http://www.onesho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